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준]

목 차

1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
2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3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
4	서북부경남거점APC 민간위탁 동의안	25
5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4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4. 8. 1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4. 8. 16.

2. 제안이유

- 슬레이트 지붕 노후화에 따른 군민 건강 보호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 개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안정성, 전문성,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사업명 :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 나. 위탁기간 : 2025. 1. ~ 2027. 12.(3년간)
- 다. 사업비 : 1,188백만원((국594(50%), 도178.2(15%), 군415.8(35%))
 - 1) 주 택 : 982백만원(국 491, 도 147.3, 군 343.7)
 - 2) 비 주 택 : 162백만원(국 81, 도 24.3, 군 56.7)
 - 3) 지붕개량 : 44백만원(국 22, 도 6.6, 군 15.4)

라. 사업량 : 316동/연(주택·비주택 철거 309, 지붕개량 7)

마. 위탁비용 : 95백만원/연(사업비의 8%)

바. 위탁범위 : 슬레이트 처리(해체·제거) 및 지붕개량사업

- 1)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2) 업체 선정, 계약 체결
- 3) 슬레이트 면적조사, 사업 공사현장 감독 및 안전관리, 교육 실시
- 4) 사업결과 제출 및 정산

사. 그간 추진현황

1) 슬레이트 시설물 실태조사 (단위 : 동)

연도	계	주택	창고	축사	기타	비고
2013	10,784	7,914	1,564	917	389	3,799동 감
2021	6,985 (▽35.2%)	4,824 (▽39%)	1,302 (▽16.8%)	738 (▽19.5%)	121 (▽68.9%)	

2) 추진실적 (단위 : 동)

구분	철거 현황				비고
	철거율(%)	계	환경과	도시건축과	
계	33.0	3,567	3,380	187	
2013년		138	129	9	
2014년		162	100	62	
2015년		262	199	63	
2016년		189	136	53	
2017년		368	368	-	
2018년		230	230	-	
2019년		331	331	-	
2020년		546	546	-	
2021년		414	414	-	
2022년		335	335	-	
2023년		335	335	-	
2024년		257	257	-	추진중

3) 추진방법

- 2013~2016년 : 한국환경공단 위탁 사업 추진
- 2017년 : 직접 수행(민간경상보조사업)
- 2018년 : 직접 수행(시설비)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개정(2017.2.28.)으로 한국환경공단 위탁 규정 폐지 (2017년부터 시군별로 직접수행, 민간위탁, 민간보조 3가지 방법으로 사업추진)

- 2019~2021년 : 민간위탁 추진(한국석면안전협회)
- 2022~2024년 : 민간위탁 추진(한국석면안전협회)

4) 2019년 민간위탁 추진배경

- 2017년부터 도시건축과 등 타부서 연계사업을 환경부서에서 일원화하여 직접 추진함에 따라 사업량 증가, 범위 확대, 석면 관리 안정성 및 전문성 부족 등 업무추진 애로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 직접수행 또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권고 (2018.11.)함에 따라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

아. 운영계획(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방법)

1) 업체선정 : 공개모집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

2) 참가자격

-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인력의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종사자의 근로조건 유지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수탁기관의 이사·임원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3) 위탁업체 선정방법

-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 절대평가(40점), 상대평가(60점)
 - ▶ 사업수행능력 : 배점 40점(발주부서 평가, 절대평가) ⇒ 실적평가(30점), 경영상태(10점)
 - ▶ 사업수행계획 적정성 : 배점 60점(심의위원 평가, 상대평가) ⇒ 사업수행 목표, 준비계획, 인력편성 및 관리계획 등

4) 평가방법

- 절대평가 : 평가산식에 의해 담당부서에서 평가
- 상대평가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평가

5) 위탁기간 : 2025. 1. ~ 2027. 12.(3년간)

4.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의 장점

- 1) 2013~2016년까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추진하였으나,
- 2) 2017년 2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위탁 규정 삭제로 직접 수행한 결과, 현장 감독 등 업무수행 행정력 부족과 석면처리의 안전성, 전문성, 효율성 확보가 요구되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2021년, 2022년~현재까지 민간위탁을 추진중임.

나. 관련 법령

- 1)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 3)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2024.1. 환경부)

다. 향후 계획

- 1) 2024. 8. : 민간위탁동의안 군의회 제출
- 2) 2024. 9. ~ 10. : 민간위탁 공고 및 심의위원회 개최, 선정
- 3) 2025. 1. : 위·수탁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

라. 소요예산

- 위탁운영비 : 사업비의 8%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거창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위·수탁 완료일이 2024. 12. 31. 도래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주택의 지붕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되어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건축자재로 알려져 있으며 처리비용 과다로 인한 처리지연 및 불법처리의 소지가 있어 처리비용 지원 등을 통해 조기 철거가 시급한 실정임.
- 슬레이트 처리사업 전문업체 위탁을 통해 처리비용 절감과 슬레이트 처리 전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 아울러, 향후 수탁기관 선정 시 전문성 및 안전성이 확보된 신뢰도가 높은 전문업체를 선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임.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행정복지국 행정과)

(제정) 1999.07.15 조례 제1515호
(일부개정) 2013.06.12 조례 제2138호
(일부개정) 2014.05.28 조례 제2192호
(일부개정) 2021.12.29 조례 제2688호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6.12)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수탁기관 선정,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개정2014.5.28)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2014.5.28)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3.6.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계약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 2. 6.]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09. 2. 6.]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는 기관의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사무의 위탁·위탁 절차와 위탁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 2.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 구매는 제외한다)·용역(청소·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12. 5. 23., 2013. 3. 23., 2014. 11. 19., 2016. 9. 13.>

석면안전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사용 실태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및 석면의 해체·제거·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제26조(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및 제123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약칭 : 공유재산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 1. 7., 2015. 1. 20., 2021. 4.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 6. 8., 2014. 1. 7., 2015. 1. 20., 2021. 4. 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사용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0. 2. 4., 2021. 4. 20., 2022. 11. 15.>

1.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4., 2021. 4. 20.>

2024년 도내 시군 위탁 현황

(2024. 6. 30. 현재)

시군명	위탁현황	총 협약기간		전화번호	비고
창원시	석면안전협회 위탁	2024~2026	3년	225-3429	기후대기과
진주시	석면안전협회 위탁	2024~2026	3년	749-8641	환경관리과
통영시	석면안전협회 위탁	2024~2026	3년	650-5461	환경과
사천시	석면안전협회 위탁	2024~2026	3년	831-5596	환경보호과
김해시	석면안전협회 위탁	2022~2024	3년	330-3354	기후대기과
밀양시	석면안전협회 위탁	2024~2026	3년	359-5319	환경관리과
거제시	석면안전협회 위탁	2024~2026	3년	639-3952	기후환경과
양산시	석면안전협회 위탁	2023~2025	3년	392-2612	기후환경과
의령군	석면안전관리협회 위탁	2023~2024	2년	570-2611	환경과
함안군	석면안전협회 위탁	2022~2024	3년	580-2422	환경과
창녕군	석면안전협회 위탁	2024~2025	2년	530-7484	환경위생과
고성군	석면안전협회 위탁	2024~2026	3년	670-5873	환경과
남해군	석면안전협회 위탁	2023~2025	3년	860-3264	환경과
하동군	석면안전협회 위탁	2024~2024 (매년 위탁)	1년	880-2583	환경보호과
산청군	석면안전협회 위탁	2022~2024	3년	970-7122	환경위생과
함양군	석면안전협회 위탁	2022~2024	3년	960-6123	환경위생과
거창군	석면안전협회 위탁	2022~2024	3년	940-3493	환경과
합천군	석면안전협회 위탁	2023~2025	3년	930-3342	환경위생과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4. 8. 16.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4. 8. 16.

2. 제안이유

-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운영 민간위탁이 2024. 12. 2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사 업 명 :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 나. 주기장 현황

명 칭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위 치	거창읍 정장리 394, 394-3번지 일원
면적(주기면수)	5,863㎡(100대)
부 대 시 설	사무실, 화장실, 회의실, CCTV, 가로등

※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위탁현황

- 수탁자 :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남 거창지회
- 수탁기간 : 2021. 12. 26 ~ 2024. 12. 25(3년간)
- 이용현황 : 일평균 50여대
- 사 용 료 : 2022년(3,829천원), 2023년(4,026천원), 2024년(3,761천원)
- ☞ 재산평가가격의 연1천분의 25

다. 운영계획

- 1) 근 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4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칙』 제4조

2) 배 경

- 수요자 중심의 공영주기장 관리·운영으로 행정능률 향상
- 건설기계 운행자의 자발적 주기 유도로 주택가, 도로변 등의 불법주기 행위 개선

3) 위탁개요

- 기 간 : 2024. 12. 26 ~ 2027. 12. 25(3년간)
- 시 설 :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위 치	부지면적	건 축 물	시 설 물
거창읍 정장리 394, 394-3	5,863m ²	관리동 1동 (1층, 99.75m ²)	사무실 1개, 회의실 1개, 휴게실 1개, 화장실 3개, 싱크대 2개, 신발장 1개, 환풍기 2개, 수도 2개, 전기쿡탑 2구, 보일러 1개, CCTV 6대, 중앙감시장치 1대, 전기통신시설 1식, 관정 1개소, 웬스 141경간

- 대상업무

-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 전 시설물 및 사무용품 등 재산의 선량한 관리
- 공영주기장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
- 공영주기장 내 주차된 차량 및 전반적인 시설물 모든 사항에 대한 도난, 화재 등 재난예방 조치
- 공영주기장 운영, 이용자,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 사 용 료 :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라. 수탁자 모집

- 1) 방 법 : 공개모집
- 2) 신청자격 : (거창군내 주소를 둔)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
- 3)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 4) 평가방법 : 정량(20) + 정성평가(80)

마. 향후계획

- 1) 2024. 10. : 수탁단체 모집공고
- 2) 2024. 10.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3) 2024. 11. : 수탁단체 선정, 협약체결 및 공증
- 4) 2024. 11. : 위탁사항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 게재

바. 참고사항 : 붙임

- 1) 관련법 발췌
- 2) 현장사진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운영 민간위탁이 2024. 12. 2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임.
- 수요자 중심의 공영주기장 관리·운영으로 행정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거창군내 주소를 둔 건설기계사업자 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 주기면수가 100면인데 비해 일평균 50여대가 이용하고 있어 거창시내 불법주기 근절을 통해 이용률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거창군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소속이나 차종에 상관없이 주기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공영주기장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주기장(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
-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수탁기관 선정,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협약체결 등)

-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4조(대부료율)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의 목적에 사용하는 재산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협약의 체결 등) ① 소관부서는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탁 협약의 체결, 협약내용의 공증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탁사항을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② 협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위치도 :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394번지 일원



현장사진 :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394번지 일원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4. 8. 1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4. 8. 16.

2. 제안이유

-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이 2024. 12. 31.자로 만료,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함.

3. 주요내용

가. 운영현황

- 1) 수탁자 : (주)거창80번택시(대표 이진연)
- 2)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간) ※ 최초 위탁 : 2012. 7. 1.
- 3) 지원사항 : 운영차량, 운영비(인건비, 보험료, 유류대 등) 분기별 정산
- 4) 소요예산 : 715,766천원 ※ 2024년 기준
- 5) 차량대수 : 13대

※ 현재 9대 운영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100명당 1대로 시행규칙이 개정(2023. 7.)됨에 따라 예산 편성 후 2024년 8월 4대 구입완료 예정

- 6) 이용대상자 : 442명 ※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일시적 휠체어이용자
 - 7) 운행지역 : 거창군 관내, 경상남도 전지역,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무주군, 장수군, 김천시, 성주군
 - 8) 이용요금 : (관내) 2,000원, (관외) 시외버스 요금의 1.5배
- 나. 위탁계획

1) 근 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2) 배 경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제공
-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함

3)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간)
- 위탁사항 :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13대 운영
- 소요예산 : 715,766천원(국123,500, 군592,266)
- 위탁대상 업무
 -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운송사업 전반
 - 종사자 16명(운전원 15명, 사무원 1명) 관리
 - 차량 유지관리, 대군민 서비스 제공 등

4) 심사방법 및 수탁자 결정 방법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신청자격 : (관내 주소를 둔) 특별교통수단 차고지 확보와 이동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가능하며,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

- 선정방법 : 특별교통수단운영심의위원회 심사
- 평가방법 : 객관적평가(30) + 주관적평가(70)

다. 향후계획

- 1) 2024. 10. : 수탁단체 모집 공고
- 2) 2024. 10. : 특별교통수단심의위원회 심의
- 3) 2024. 11. : 수탁단체 선정, 협약체결 및 공증
- 4) 2024. 11. : 위탁사항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창군 특별교통수단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가장 적합한 사업자를 공모 절차를 통하여 재선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제공으로 사회참여 기회제공 및 복지를 증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해당 사무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모를 통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차량 및 운영인력이 증가됨에 따라 관련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운전자의 준수사항이나 직무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하여 위탁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

● 관련 법령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운영)

-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행한다.
- ② 군수는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④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라 한다)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법 제16조의2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인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 등으로 하며,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⑦ 시·도지사는 인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의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시·도지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⑧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⑨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⑩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⑪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⑫ 특별교통수단과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서북부경남거점APC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4. 8. 1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4. 8. 16.

2. 제안이유

- 서북부경남거점APC의 민간위탁 운영 관련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을 함으로써 서북부경남거점APC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시설명 : 서북부경남거점APC
- 나. 위치 :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
- 다. 시설현황 : 12,603㎡(선별장 5,850㎡, 저온저장고 3,577㎡, 기타 3,176㎡)
- 라. 위탁현황
 - 1) 위탁기관 : 거창한거창조합공동사업법인
 - 2)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

3) 위탁사무 : 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시설물 관리, 농산물 수집·출하·판매기능 통합 운영)

마. 민간위탁 재위탁

1) 당 초 : 2022. 1. 1. ~ 2024. 12. 31.(3년간)

2) 재 위 탁 : 2025. 1. 1. ~ 2027. 12. 31.(3년간)

< 거창한거창조합공동사업법인 >

□ 조직유형 : 거창군 생산유통통합조직

(거창군 6개 관내 농협이 참여하여 '21. 12월 설립, '22년 산지유통혁신조직 선정)

□ 설립목적 : 조합간 경제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규모화·전문화 등 경제사업 활성화 도모

출자자 수(출자법인)	총 출자액(천원)	평균	최고	최저
6개 농협	1,800,000	300,000	300,000	300,000
출자법인(6개) = 거창농협, 거창사과원예농협, 남거창농협, 동거창농협, 북부농협, 수승대농협				

4. 참고사항

○ 추진사항

가.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자체평가

1) 평가일자 : 2024. 8. 9.

2) 평가대상 : 기 수탁기관(거창한거창조합공동법인)

3) 평가내용 : 성과평가(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위탁적정성

4) 평가자 : 수출유통담당

나. 유통센터운영위원회 심의

1) 평가일자 : 2024. 8. 12. ~ 14.

2) 평가대상 : 기 수탁기관(거창한거창조합공동법인)

3) 평가내용 : 성과평가(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위탁적정성

4) 평가자 : 유통센터운영위원회

○ 관련 법령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나.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9조,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

다. 「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제7조, 제17조

붙임 1. 관련 법령 1부.

2. 민간위탁 연장 추진 계획 1부.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북부경남거점 APC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거창한거창조합공동사업법인에 재계약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법령이나 관련 조례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산지유통센터는 농산물의 선별·포장·규격출하·가공·판매 등의 과정을 축소하고 보다 빠른 처리, 정확한 관리를 통해 유통 비용을 절감시켜 농업인에게는 고수익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싸게 구매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

- 2024년 3월 ‘거창사과 유통시장 개혁을 위한 군민대토론회’ 개최 시 서북부경남거점 APC 운영에 있어 공선참여 농가 확대, 마케팅 역량제고, 농가 수취가 제고, 선별·정산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거창사과의 명성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재계약과 전국단위 공모의 장·단점에 따른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 해결에 있어 적합한 민간위탁 방안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재계약 시 사업계획 등에 대한 소관 부서장의 상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2022. 11. 15.>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12. 2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6. 21., 2015. 7. 2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신설 2013. 6. 21., 2015. 7. 20.>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1.>

[전문개정 2009. 4. 24.]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제9조(협약체결 등)

-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타조례개정 2021.9.29.)
- 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회동의)

- 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집하·선별·포장·저장·판매
2. 농산물의 세척·절단·살균·포장 등 신선편이 상품의 생산 및 판매
3.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도·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
4. 농산물의 판매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5. 그 밖에 유통센터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유통센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21.12.29.)

1. 유통센터를 위탁 운영할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선정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2021.12.29.)
2. 유통센터 위탁 이용료에 관한 사항
3. 유통센터의 위탁 관리 및 운영에 드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수탁자 선정)

군수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탁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농산물의 수집·판매 능력, 투자계획, 자금조달계획, 경영계획, 인력확보 및 농산물유통에 대한 경험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항삭제및개정 2021.12.29.)

서북부경남 거점APC 민간위탁 운영 계획

◆ 서북부경남 거점APC 민간위탁 운영 관련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운영 계획(안)입니다.

I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9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
- 「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제7조, 제17조

II 운영 현황

- 시설 현황
 - 준 공 : 2009. 9. 30. (개장 2009. 11. 10.)
 -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
 - 시설규모 : 부지 36,376㎡ / 시설연면적 12,603㎡
 - 주요시설 : 선별장 5,850㎡, 저온저장고 3,577㎡, 기타 3,176㎡
- 위탁 현황
 - 수탁기관 : 거창한거창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김종경)
 -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간)
 - 위탁사무 : 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시설물 관리, 농산물 수집·출하·판매기능 통합 운영)
 - 운영성과(사과 매출)

연도	취급물량(톤)	매출액(백만 원)
2022	4,554	6,993
2023	4,573	13,242

Ⅲ 그간 추진사항

- 1차 : 2009. 11. 17. ~ 2014. 12. 31. (5년 1개월) / (주)NH유통
- 2차 : 2015. 1. 1. ~ 2018. 12. 31. (4년간) / (주)NH유통
- 3차 : 2019. 1. 1. ~ 2021. 12. 31. (3년간) / (주)NH유통
- 4차 : 2022. 1. 1. ~ 2024. 12. 31. (3년간) / 거창조공

Ⅳ 민간위탁 재위탁(연장) 계획

- 민간위탁 연장 사항 : 군의회 동의
 - 당 초 : 2022. 1. 1. ~ 2024. 12. 31.(3년간)
 - 연 장 : 2025. 1. 1. ~ 2027. 12. 31.(3년간)
-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평가 및 연장 심의

구분	자체평가	심의평가
평가일자	24. 8. 9.	24. 8. 12. ~ 8. 13.
평가자	수탁기관, 수출유통담당 2명	유통센터운영위원회
평가내용	· 성과평가(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10개 분야) · 위탁적정성(수탁기관 운영관리의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등)	
평가방법	자료 검토 및 자체평가	서면심의

- 위탁사무 : 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 시설물 관리, 농산물 수집·출하·판매기능 통합 운영

Ⅴ 향후계획

- 2024. 8. 9. ~ 14. : 자체평가 및 심의회 심의
- 2024. 8. 19. : 거창군의회 임시회 동의안 제출
- 2024. 9. ~ 10.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위·수탁 협약서 공증, 시설물 점검
- 2025. 1. ~ 6. : 수탁자 거점APC 운영·관리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4. 8. 1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4. 8. 16.

2. 제안이유

-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을 위하여 운영 중인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2024. 12. 31.)됨에 따라 현장 중심의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역량을 갖춘 수탁단체를 공개 모집 하여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 거점시설 운영 활성화를 통한 기초거점서비스 공급의 핵심 지원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
 - 1) 거창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 2) 농식품부 시군역량강화사업(공모사업) 시행
 - 매년 공모를 통해 사업비 확보(전년도 사업실적 중요평가 요소)
- 3) 농촌협약사업 추진 지원
- 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추진 지원
- 5)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지원
- 6) 거창군 발주 S/W사업 병행(협업) 추진

나.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위탁운영(안)

- 1) 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 (3년간)
- 2) 위 치 : 지역개발사업 완료지구 내(신활력공유센터 준공 후 이전)
 - ※ 현재 거창읍 월천권역 활성화를 위해 권역 사무실에 위치
- 3) 구 성 원 : 상근직 3명(사무국장, 팀장 2) / 비상근 센터장
 - ※ 구성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채용

다. 연간 소요예산(2025년 기준)

- 1) 운영비 : 50백만원(군비)
- 2) 사업비 : 354백만원(국 248, 도 32, 군 74) / 농식품부 시군
역량강화사업

구분	운영비 (매년 고정금액)	사업비 (2025년 확보금액)
재원	군비 100%	농식품부 시군역량강화사업 (국70%, 도9%, 군 21%)
합계	50,000천원	354,000천원
인건비	시군역량강화사업 지침에 따라 지방비 부담분 범위 내에서 상근직 3명 인건비 편성(총액인건비) → 추후 사업실적에 따라 사업비 증감 →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로 작용	106,000천원 - 사무국장 인건비(1명) 2,600천원 × 12개월 = 31,200천원 - 팀장 인건비(2명) 2,400천원 × 12개월 × 2명 = 57,600천원 - 상근직 3명 4대보험 810천원 × 12개월 = 9,720천원 - 상근직 3명 퇴직적립금 620천원 × 12개월 = 7,440천원 - 예비비 40천원
수 당	35,400천원 - 센터장 활동비 1,500천원 × 12개월 = 18,000천원 - 상근직원 초과근무 수당 200천원 × 3명 × 12개월 = 7,200천원 - 상근직원 출장여비 100천원 × 3명 × 12개월 = 3,600천원 - 상근직원 명절휴가비 1,100천원 × 3명 × 2회 = 6,600천원	
운영비	14,600천원 - 사무기기 임대비(복사기, 정수기 등) - 사무용품 구입 - 전기·통신 요금 등	
사업비	농식품부 시군역량강화사업 공모로 매년 300백만원~400백만원 사업비 확보	248,000천원 - 단계별 마을만들기 사업 - 마을활동가 발굴·육성 - 거점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등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 위탁 대상사무 기준), 거창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18조(센터 설치), 제20조(위탁운영)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 (2024. 12. 31)됨에 따라 운영 역량을 갖춘 수탁단체를 공개 모집하여 기초거점서비스 공급의 핵심 지원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임.
- 추진방향을 보면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상근직원 공개모집으로 신활력플러스 사업,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한 역량있는 지역 인재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 위탁사업 외 개별사업 S/W분야 등 거창군 발주사업 병행수행 허용, 이윤, 위탁수수료 등 기관수익창출 등을 통해 수탁기관의 적극성을 유도하겠다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그간의 추진방향에서 변화를 모색한 것으로 보이며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위탁사무의 내용을 보면 마을만들기사업의 이해도와 전문성, 책임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관계나 기여도까지도 평가가 되어 수탁기관이 선정되어야 역할 수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바 수탁기관 선정에 철저가 요구되며 법령이나 관련 조례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1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위탁운영

□ 운영현황

- 설립 : 2019. 10. 1. / 경상남도 최초
- 위치 : 지역개발사업 완료지구 내(신활력 공유센터 준공 후 이전)
※ 현. 거창읍 월천권역 활성화를 위해 권역 사무실에 위치
- 주요역할 : 농식품부 시군역량강화사업 및 마을만들기 지원
- 운영방식 : 사무의 민간위탁 / 수탁기관 공개모집(경쟁)

구분	기간	수탁기관	구성원
1차 (공개모집)	2019. 10. 1. ~ 2021. 12. 31.	(사)행복마을 거창	비상근 1명, 상근 3명 센터장(비상근), 사무국장 1, 팀장 2
<p>잡은 구성원 변동과 코로나19로 센터운영 및 사업추진 애로</p>			
2차 (공개모집)	2022. 1. 1. ~ 2024. 12. 31.	(사)행복마을 거창	상근 4명 센터장(상근), 사무국장 1, 팀장 2
<p>원활한 센터운영을 위해 상근직 센터장 공개모집(정상준, 김훈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지역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민관 협업을 통해 지역조직(행복마을 거창)을 구성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이 이루어졌으나, 수탁기관 활동 미약으로 마을센터 운영 활성화 한계(원인 : 수탁기관 수익 없음) • 수탁기관 수익 창출과 상근직 소득증대를 위해 농촌지역개발 S/W사업 수행을 유도하였으나 역량부족으로 실패 			

□ 위탁 지원금

- 구성
 - 가. 사업비
 - 농식품부 시군역량강화사업(공모) / 국 70%, 도 9%, 군 21%
 - 매년 300백만원 ~ 350백만원 확보 중(최대 400백만원 까지 가능)
 - 마을대학, 완료지구 활성화 사업 등 추진(총사업비 70%)
 - 지방비 매칭분(총사업비 30%) 상근직 인건비 활용 가능
- ※ 매년 사업 추진 실적(집행률 등)에 따라 사업비 확보 / 실적↑ ⇨ 사업비↑

- 나. 운영비
- 군비 100% / 매년 66백만원 정도 소요
 - 센터사무실 운영비(16백만원) / 사무기기임차, 공과금 등
 - 상근직 인건비(50백만원) / 매칭사업비 부족분

※ 상근직 4명 인건비 150백만원 정도 소요(사업비 100백만원, 운영비 50백만원)

구 분	재 원	주요내용	
사업비 시군 역량강화	국 70%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역량강화 사업 (마을대학, 완료지구 활성화 등)	농식품부 승인사업
	도 9%, 군 21%	(2021년부터) 상근직 2명 인건비 활용가능 (2023년부터) 상근직 인건비 활용가능	센터 직접 사업 시행 시
운영비 군비	군 100%	센터사무실 운영비 (사무기기 임차비, 공과금, 수수료 등)	16백만원/연 정도
		상근직 인건비 (지방비 매칭 사업비 인건비 활용 후 부족분)	50백만원/연 정도
<p>• 시군역량강화 : 농식품부 공모사업(국 70%, 도 9%, 군 21%) ※ 2021년부터 시군역량강화 전담기관(중간지원조직) 운영 공모 필수조건</p>			

○ 1-2차 위탁운영 지원액(2019년~2024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합계	38	249	412	454	447	361	
운영비	38	99	62	84	85	47	군비
사업비	0	150	350	370	362	314	시군 역량강화

○ 3차 위탁운영(안)(2025년~2027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비 고
합계	404	450	450	
운영비(군비)	50	50	50	고정금액
사업비(국도비)	354	400	400	
비 고	확정	연도별 공모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확보		

○ 2025년 세부내역(안)

구분	운영비 (매년 고정금액)	사업비 (2025년 확보금액)
재원	군비 100%	농식품부 시군역량강화사업 (국70%, 도9%, 군 21%)
합계	50,000천원	354,000천원
인건비	<p>시군역량강화사업 지침에 따라 지방비 부담분 범위 내에서 상근직 3명 인건비 편성(총액인건비)</p> <p>→ 추후 사업실적에 따라 사업비 증감 →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로 작용</p>	<p>106,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국장 인건비(1명) 2,600천원 × 12개월 = 31,200천원 - 팀장 인건비(2명) 2,400천원 × 12개월 × 2명 = 57,600천원 - 상근직 3명 4대보험 810천원 × 12개월 = 9,720천원 - 상근직 3명 퇴직적립금 620천원 × 12개월 = 7,440천원 - 예비비 40천원
수 당	<p>35,4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장 활동비 1,500천원 × 12개월 = 18,000천원 - 상근직원 초과근무 수당 200천원 × 3명 × 12개월 = 7,200천원 - 상근직원 출장여비 100천원 × 3명 × 12개월 = 3,600천원 - 상근직원 명절휴가비 1,100천원 × 3명 × 2회 = 6,600천원 	
운영비	<p>14,6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기기 임대비(복사기, 정수기 등) - 사무용품 구입 - 전기·통신 요금 등 	
사업비	<p>농식품부 시군역량강화사업 공모로 매년 300백만원~400백만원 사업비 확보</p>	<p>248,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 마을만들기 사업 - 마을활동가 발굴·육성 - 거점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등

2

연도별 추진 주요사업

구분	주요내용	비고
2019년	▶ 센터 역량강화(타 지자체 사례조사 및 견학, 교육 등)	1차 위탁
2020년	▶ 찾아가는 마을대학 - 23개 마을 ▶ 마을활동가 육성대학 - 26명 수료 ▶ 작은공동체 지원공모사업 - 20개 단체 지원 ▶ 마을만들기 소식지 발행 - 2회 ▶ 센터직원 역량강화 - 자체학습, 현장학습, 외부교육 등	
2021년	▶ 찾아가는 마을대학 - 22개 마을, 511명 ▶ 함께하는 마을만들기 - 19개 마을, 380명 ▶ 농촌현장포럼 8개 마을 727명 ▶ 마을 주민아카데미 - 180명 참여 ▶ 작은공동체 지원 - 650명 참여 ▶ 프로젝트 사업 - 퍼실리테이터 21명 수료	
2022년	▶ 찾아가는 마을대학 (공통, 심화) - 22개 마을, 486명 ▶ 함께하는 마을만들기 - 20개 마을 431명 ▶ 농촌 현장포럼 - 4개 마을 지원 ▶ 완료지구 역량강화 - 6개소 124명 지원 ▶ 작은공동체 지원 - 610명 책자 1,000부, 사진첩 75 제작 ▶ 프로젝트 사업 - 주민자치회 11개소, 퍼실리테이터 11명 수료 ▶ 성과공유회 - 101명 참여, 책자 500부 제작	2차 위탁
2023년	▶ 찾아가는 마을리더교육 - 159명 참여 ▶ 찾아가는 마을대학 - 16개 마을, 411명 참여 ▶ 함께하는 마을만들기 - 16개 마을 1045명 참여 ▶ 완료지구 역량강화 - 6개소, 129명 ▶ 완료지구 운영활성화 지원 - 5개소 2,765명 ▶ 거창한 마을 소식지 - 마을소식지 250부 제작	
2024년	▶ 찾아가는 리더교육 - 160명 지원 / 10회(워크숍, 견학) ▶ 거창한 마을학교(공통) - 10개 마을 ▶ 거창한 마을학교(심화) - 4개 마을 ▶ 마을규약 제정 - 4개 마을 지원 ▶ 마을활동가 양성지원 - 25명 수료 ▶ 완료지구 운영활성화 지원 - 추진중 ▶ 완료지구 역량강화 - 추진중 ▶ 성과공유회 - 추진 예정	

□ 추진방향(부서의견)

- 수탁기관의 관리 부적정과 구성원간 무관심으로 인한 직원일탈 재발 방지를 위해 수탁기관 재선정 필요 → **수탁기관 공개모집**
- 본사업 외 신활력플러스, 도시재생 등 추진을 통한 역량있는 지역인재의 참여기회 제공 → **상근직원 공개모집**
- 센터장 실무 역할 축소로 기관 대표로서 본연의 역할 수행 필요 → **센터장 비상근 전환 및 사무국장 전결권 확대** ※ 전·현직 상근 센터장 동일 의견
- 총액인건비제 보완 적용으로 사업추진 실적제고 및 경쟁력 강화 → 상근직원 3명 **인건비는 시군역량강화 지방비 매칭분(30%)으로만 총당**
→ 실적에 따라 사업비(인건비) 확보 ⇨ 직원 성과에 따라 수탁기관 자율편성
- 수탁기관의 직접적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 필요
→ 위탁사업 외 개별사업 S/W분야 등 **거창군 발주 사업 병행수행 허용**
→ 이윤, 위탁수수료 등 **기관수익창출** → **직원인센티브(협업활동비 등)**

□ 위탁추진(안)

- 위탁근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
 - 거창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18조(센터설치), 제20조(위탁운영)
- 위탁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 농촌협약사업 추진 지원 - 농촌지역개발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부 시군역량강화사업 시행 -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시행계획 지원 - 거창군 발주 S/W사업 병행 추진 등
-----------------------------------------------------------------------------------------------------------------	-------------------------------------------------------------------------------------------------------------------------------------
- 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 ※ 1차 농촌협약 완료 기간과 일치
- 지원액(년)
 - 사업비 : 300백만원~400백만원 /시군역량강화 확보금액
 - 운영비 : 50백만원 정도 / 센터운영비, 센터장활동비, 출장초과 등
- 모집방법 : 공개모집(경쟁)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거창군 관내에 주소를 둔 법인
- 향후일정(안)
 - ①의회 민간위탁 동의(2024. 9.) ②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2024. 10. ~ 11.)
 - ③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및 선정(2024. 11.) ④위수탁 협약 체결(2024. 12.)

● 관련 법령

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② 거창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18조(맞춤형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군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맞춤형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위탁 운영)

군수는 지원센터 및 마을만들기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추진할 능력이 있는 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조전부개정 2020.12.30.)